



환경부

환경부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시험검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변경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①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계약시 계약체결 10일 전까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계약관련 자료 제출

②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20.10월 기준)

③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 측정대행과 관련된 계약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식 제공(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

④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완화

☞ 분석요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 졸업자 추가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별표2] '직무분야별 학과 261 환경'을 참고하여 지자체에서 판단

⑤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일부 강화('22.10 시행)

☞ 등록기준의 '기사'를 '기사취득 후 5년이상 측분석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변경

3. 아울러, 기관별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해당사항을 전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역·지방청 : 통합허가사업장

지자체 : 관내 측정대행업체 및 수질·대기 1~2종 배출사업장

협회 : 소속된 회원사(측정대행업)

붙임 : 측정대행계약관리 제도시행 관련 안내문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통합허가제도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한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전북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대행업체, 수질·대기 1~2종 사업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시홍 환경사무관 최정환 과장 전결 2020. 9. 29. 오훈진

협조자

시행 녹색기술개발과-249 (2020. 9. 29.)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자연환경정책실/ <http://me.go.kr>
환경경제정책관 환경연구개발과

전화번호 044-201-6672 팩스번호 044201 / sihong2@me.go.kr / 대국민 공개